

성남혜은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성남혜은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성남혜은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하고 성남혜은 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구 성

제3조 (운영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여야 한다.
-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한다.
- ③ 지역위원의 자격요건은
 -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다.
-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⑤ 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조 (운영위원의 임기)

-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③ 운영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의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을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의 의무)

- ①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 ④ 운영위원은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 대상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8명으로 하고, 200명 이상의 경우 10명으로 한다. (운영위원 정수 산출 학생수 기준일 : 3월 1일)
-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40%(4명), 교원위원 30%(3명), 지역위원 10%(1명)로 구성한다.
- ③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④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요소)

- ①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이며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의 책임자이다.
- ② 위원이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거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에는 위원장이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 결위 또는 사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 대리자이다.
- ⑤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제8조 (운영위원의 선출 시기)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인 3월 21일까지 선출한다.
-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전일까지인 3월 30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 (운영위원의 선출 방법)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정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동의를 구해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9조의 2 (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각각의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 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 ① 운영위원회는 최초로 소집하는 회의에서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 무기명투표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명씩 선출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

출한다.

- ② 1차 투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1, 2, 6에 해당 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외 나머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로 결정한다.

-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②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 하는 경우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 유지)
- ③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④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하는 경우
- ⑤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⑦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2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 장 기 능 및 심 의

제13조 (기능)

-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4조 (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②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④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⑤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⑥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⑦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⑧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⑨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
- ⑩ 학교급식
- ⑪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⑫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
- ⑬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5조 (심의 · 의결 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 장 회의 운영

제16조 (회의 소집) 회의는 임시회와 정기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① 임시회는 위원 선출 후 4월 15일 이내 학교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 ② 정기회는 6월에 운영한다.
-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 재적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소집공고를 한 후에는 변경 혹은 철회를 할 수 없다. 단, 심의할 안건이 없게 되거나 집회를 요구한 위원의 집회요구 철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고의 변경 혹은 철회가 가능하다.
- ④ 운영위원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 (안건 발의)

- 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 ②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이 가능하다.

제18조 (자료 요구) 심의와 관련된 자료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교직원 또는 학교장은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이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일반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특별정족수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 (회의 공개)

-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 개최시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록 작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회의 결과는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회의 결과,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소위원회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4조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5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6 장 학교급식소위원회

제26조 (학교급식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 산하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혜은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